

## 화순군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 보고

### 1. 심사경위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97. 5. 20 화순군수
- 나. 회부일자 : '97. 5. 28
- 다. 상정일자 : '97. 6. 24 (제55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

###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자 : 재무과장 정부웅

나. 개정사유

- 현실에 불합리한 용어와 조문을 정비코자 함

다. 주요내용

- "도비보조 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도지사가 지정한 경우"를 신설  
(안 제4조 제3호)
- "군수는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하여야 할 보조금에 대하여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 할 수 있다"를 신설 (안 제18조)
-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것으로서  
중요한 재산은 당해 보조사업을 완료한 후에 있어서도 군수의 승인없이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 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에 제공하여서는 안된다"를 신설 (안 제19조)
- "보조금의 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를 신설 (안 제20조)

### 3.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민병항)

- 동 조례 개정안은 불합리한 용어 및 관련 조항을 변경 정비코자 하는 개정  
조례로서 화순군 조례규칙 심의회 의결을 거치는 등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절차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됨.

4. 질의 답변 요지

" 생 략 "

5. 토론요지

" 생 략 "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

첨 부 : 화순군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부. 끝.

## 화순군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 안	97-83
번 호	

제출년월일 : 1997. 5. 28

제 출 자 : 화순군수

### 1. 제안이유

현실에 불합리한 용어와 조문을 정비코자 함

### 2. 주요골자

- "도비보조 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도지사가 지정한 경우"를 신설  
(안 제4조 제3호)
- "전항"을 "제1항"으로 개정 (안 제5조 제2항)
-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사항"을 "다음 각호의 사항"으로 개정 (안 제6조)
- "지령서"를 "보조금 교부 결정서"로 하고 "발부"를 "통지"로 하며 "보조지령 전"을 "보조금 교부결정전"으로 개정 (안 제8조 제1항 및 제2항)
- 조의목적 "사전변경에 의한 보조결정 변경·취소"를 "사정변경에 의한 교부 결정의 변경·취소"로 하고, "전항"을 "제1항"으로 하며 "이를"을 "제8조의 규정을"로 개정 (안 제10조 제2항 및 제3항)
- "용도의"를 "용도외"로 개정 (안 제11조)
- "계승받는"을 "승계받는"으로 개정 (안 제12조 제2항)
- "사업년도전에"를 "사업년도 만료전에"로 하고 "사업정산서"를 "사업비 정산서"로 개정 (안 제13조 제2항)
- "군수는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하여야 할 보조금에 대하여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를 신설 (안 제18조)
-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것으로서 중요한 재산은 당해 보조사업을 완료한 후에 있어서도 군수의 승인없이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 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에 제공하여서는 안된다."를 신설 (안 제19조)
- "보조금의 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것을 제외하고는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를 신설 (안 제20조)

## 화순군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화순군보조금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중 제3호를 제4호로 하고, 동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3. 도비보조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도지사가 지정한 경우

제5조 제2항중 "전항"을 "제1항"으로 한다.

제6조중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사항"을 "다음 각호의 사항"으로 한다.

제8조 제1항중 "부과한 경우에는 그 조건을 부가한 지령서"를 "부과한 보조금 교부 결정서"로 하고, 동항 중 "발부"를 "통지"로 하며, 동조 제2항 중 "보조지령전"을 "보조금 교부 결정전"으로 한다.

제10조제목 "사전변경에 의한 보조결정의 변경. 취소"를 "사정변경에 의한 교부결정의 변경. 취소"로 하고, 동조 제2항 중 "전항"을 "제1항"으로 하며, 동조 제3항 중 "이를"을 "제8조의 규정을"로 한다.

제11조제목중 "용도의"를 "용도외"로 한다.

제12조 제2항 중 "계승받는"을 "승계받는"으로 한다.

제13조 제2항 중 "사업년도 전에"를 "사업년도 만료전에"로 하고, 동항 중 "사업 정산서"를 "사업비 정산서"로 한다.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 (강제징수) 군수는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하여야 할 보조금에 대하여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제1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 (재산처분의 제한)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것으로서 중요한 재산은 당해 보조사업을 완료한후에 있어서도 군수의 승인없이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 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에 제공하여서는 안된다.

제2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 (준용) 보조금의 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구 조 문 대 비 표

현 행	개 정
제4조 (보조대상) (생략) <u>1 - 2 (생략)</u> (신설)	제4조 (보조대상) (현행과 같음) <u>1 - 2 (현행과 같음)</u> 3. 도비보조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도 지사가 지정한 경우 4. (현행 제3호와 같음)
제5조 (보조신청) ①(생략) <u>②전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u> 항을 기재한 사업 계획서를 첨부하여 야 한다.	제5조 (보조신청) ①(현행과 같음) <u>②제1항</u> - - - - - - - - - - - - - - -.
제6조 (보조금의 교부 결정) 군수는 제 5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의 교부신 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사항을 조사 검토하여 보조 금의 교부를 결정한다.  1-4 (생략)	제6조 (보조금의 교부 결정) - - - - - - - - - - - - - - - 다음 각호의 사항 - - - - - - - - - -.
제8조 (보조금등의 교부결정 통지) ①군 수는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 서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조건을 부가 한 경우에는 그 조건을 부과한 지령 서를 보조금 교부 신청자에게 발부 한다.  ②보조지령전에 시행한 공사 또는 사 업에 대하여는 보조금을 교부하지 아니한다.	제8조 (보조금등의 교부결정 통지) ① - - - - - - - - - - - - - - - - 부과한 보조금교부결정서 - - - - - 통지 - - . ②보조금교부결정전 - - - - - - - - - - - - - - -.

## 신 구 조 문 대 비 표

현 행	개 정
제10조 (사전변경에 의한 보조 결정의 (변경. 취소) ① (생략) ② 군수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 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있는 경 우에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 한한다. 1 - 3 (생략) ③ 제8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 하여 보조금의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을 취소할 경우에는 이를 준용한다.	제10조 (사정변경에 의한 교부 결정의 (변경. 취소) ① (현행과 같음) ② - - - 제1항 - - - - - - - - - - - - - - - 1 - 3 (현행과 같음) ③ - 제8조의 규정을 - - .
제11조 (용도의 사용금지) (생략)	제11조 (용도외 사용금지) (현행과 같음)
제12조 (보조사업의 내용 변경등) ①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사업을 계승받는 자는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제12조 (보조사업의 내용변경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 승계받는 - - - - -
제13조 (보조사업 실적보고) ① (생략)  ② 공공단체가 보조사업 완성 전 또는 사업년도 전에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때는 그 사업의 완성후 또는 당해년 도내에 사업 실적과 사업정산서를 제 출하여야 한다.	제13조 (보조사업 실적보고)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 사업년도 만료전에 - - - - - - - - - - - - - - - 사업비정산서 - - - - - - .

## 신 구 조 문 대 비 표

현 행	개 정
(신설)	제18조 (강제징수) 군수는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하여야 할 보조금에 대하여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 할 수 있다.
(신설)	제19조 (재산처분의 제한)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것으로서 중요한 재산은 당해 보조사업을 완료한 후에 있어서도 군수의 승인없이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 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에 제공하여서는 안된다.
(신설)	제20조 (준용) 보조금의 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것을 제외하고는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